

면, 개별 조합원별로 먼저 특수관계 여부를 따진 후 이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이 경우 조합의 지분이 51%이상 되어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하여야 하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6호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세액 안분은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임. (세정 13407-949, 2000.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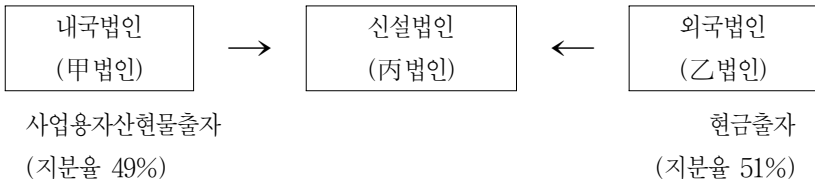
9.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본인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책임자로 본인이 근무하는 “甲” 법인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하 “乙”법인이라 한다)은 현금출자하여 신설법인(이하 “丙”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신설법인 설립현황】

가. 설립일자: 1999. 4. 20

나. 출자현황:



다. 기타사항

1) “甲” 법인과 “을” 법인은 “丙” 법인의 출자자 관계만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